

#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월 9일, 남진삼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월 16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진삼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과 단체 · 사업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안 제3조)
- 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안 제5조)
- 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안 제6조)
- 비용부담(안 제7조)
-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1부.

#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 검토보고서

### 1. 조례안 개요

- 제안자 : 남진삼 의원
- 제안일자 : 2025. 1. 9.
- 회부일자 : 2025. 1. 10.
- 상정일자 : 2024. 1. 16.

### 2.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과 단체·사업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안 제3조)
- 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안 제5조)
- 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안 제6조)
- 비용부담(안 제7조)
-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8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고 규정함.

### 나. 입법의 취지

-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에서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공사·시설 건립(10년 경과 시 제외) 사업 또는 5백만 원 이상의 운영 사업으로 표지판 설치 대상을 명시함.

- 안 제6조(표지판 기간 및 위치)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시 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의무를 고지하고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비용부담)에서는 표지판 설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표지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와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불임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불임 참고 자료

### □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3.6.11.] 외 104건

(관내 3곳: 속초시, 홍천군, 화천군)

#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379
----------	-----

발의 연월일 : 2025년 1월 9일  
발의자 남진삼 의원  
찬성자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의원

###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과 단체·사업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안 제3조)
- 나. 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다. 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안 제5조)
- 라. 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안 제6조)
- 마. 비용부담(안 제7조)
- 바.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안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11. 28. ~ 12. 9. 아래표 참조.

원안(의회안)	수정안(기획예산과)	검토
<p><b>조례명</b>  <b>“평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b></p>	<p>조례명을 “평창군 <u>지방</u>보조금 지원 <u>알림</u> 표지판 설치 조례안”으로 변경 /      “평창군 <u>지방</u>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p> <p>사유 :</p> <p>조례의 제정 목적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것으로 제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p> <p>※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오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04개의 기초 및 광역단체에서 관련 조례 운영 중이며, 표지판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으로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목적외 사용 금지 등 부정수급 예방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li> <li>- 조례안에 별도의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적용대상 사업이 모호한 부분이 있음. 다만,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를 살펴볼 때 표지판 설치 대상은 전액 군비를 보조받는 사업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례 제명을 “평창군 <u>지방</u>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음.</li> </ul>	<p>( 수 용 )</p>

##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 · 시설표지판: 1천만 원

2. 운영표지판: 5백만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 ·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제7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3항 관련)

**1. 공사표지판**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공사시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액: 백만원
- 공사개요: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시설표지판**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액: 백만원
- 준공일자: . . . .
- 의무표시기간: . . . . ~ . . .

이 시설은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 3. 운영표지판

#### 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액: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이 시설은 평창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오른쪽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자를 주 보조사업자 외 ○개 단체, 지방보조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별표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재질 등(제5조제3항 관련)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 30cm 이상</li> <li>· 세로 : 20cm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림 주석주물</li> <li>·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li> <li>· 강화유리 재질 등</li> </ul> <p>※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li> </ul>

※ 공사표지판은 공사규모와 여건 등 사업현장에 맞게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 사용할 수 있으며, 벽부착형 또는 입간판 형식으로 활용한다.

※ 운영표지판은 운영기간 등 내용을 수정 가능하도록 제작을 권장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건설안전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4. 30.>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제7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남진삼의원
연락처	(033) 330 -2500